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」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 시행('24.5.20.)에 대비,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오니 신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가. 대상: 전국 요양기관(약국제외) ... '24. 4. 22. 기준, 휴·폐업기관 제외
나. 방법: 동보팩스 ...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
나. 일정: '24.4.25.부터 3~5일 간 순차적으로 전송
3. 또한, **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공지사항 및 공단 홈페이지('24.4.26.게시)**에 동봉한 안내문과 주요FAQ를 게시할 예정이오니 미수신 요양기관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- ◆ 요양기관 정보마당 >> 공지사항
- ◆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> 국민과함께 >> 뉴스/소식 >> 공지사항

붙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문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

과장 윤지현

팀장 이완근

부장 한세정

전결 4/23

협조자

시행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(TF)-148 (2024.4.24.) 접수 ()
우 264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, 10층(반곡동, 건강보험공단 별관) / <http://www.nhis.or.kr>
전화 033-736-3386 전송 033-749-9618 / hyun1007@nhis.or.kr / 비공개(7)

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」 2024.5.20.부터 시행합니다.

□ 추진목적

-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·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*」 시행

*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

□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장애인 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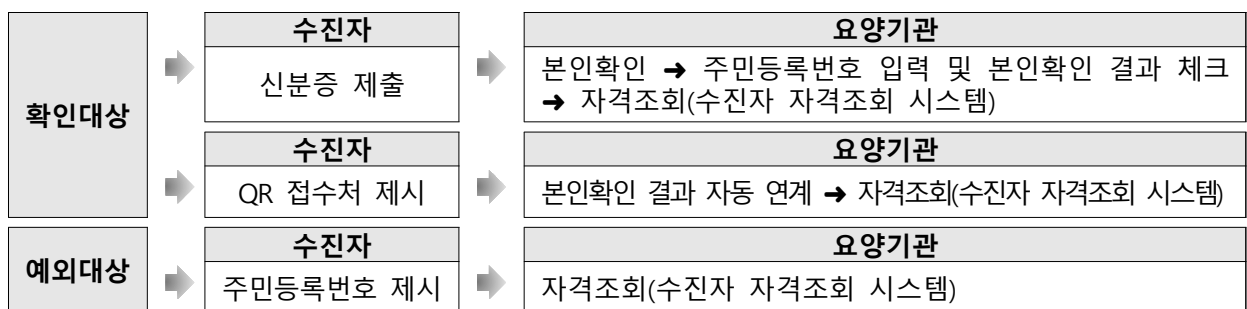
※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

□ 본인확인 예외대상

-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-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-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⑤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※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(안)으로 제도시행 전(前) 변경 가능

□ 본인확인 절차



□ 참고사항

- 제도관련, 주요 FAQ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게시예정('24.4.26.)